

요 약

○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최근 '건설노무제공자'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음. 건설노무제공자란 2008년에 폐지된 시공참여자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아울러 구성원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함.

○ 시공참여자체도 도입 배경·취지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

- 부실시공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단계 도급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피해가 불거져 2008년에 폐지되었음.
- 팀·반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공참여자체도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'부실시공이 증가'하고 '다단계 하도급이 증가'했다는 응답이 '감소했다'는 응답보다 많음.

○ 시공참여자체도 폐지 과정과 여건 조성의 필요성

-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2003년에 시공참여자체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논의를 거쳐 '선 폐지 후 보완'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.

○ 직접시공의 장점 및 전문건설업자의 위상 제고

- 시공참여자체도의 폐지에 따라 고용계약 체결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.
- 팀·반장과 전문건설업자 모두 직접시공이 '품질 확보'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함.
- 직접 시공 및 고용의 주체로서 전문건설업자의 위상이 제고됨.

○ 직접 시공 여건의 미비와 재도입 요구 그리고 진정한 상생의 해법

- 직접 시공의 여건이 미흡하므로 전문건설업자가 이러한 부담을 상쇄하고자 재도입을 요구함.
- 하지만 진정한 해법은 발주자(국민), 원수급자, 하수급자, 근로자 등 모두가 공멸하는 시공참여자체도의 재도입이 아니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직접 시공 여건의 조성에 있음. 특히 적정 노무비 확보가 중요함.

○ 미국 및 호주의 적정 노무비 확보 사례

- 적정 노무비를 확보함으로써 근로자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건설산업 전체를 보호하고, 가격경쟁을 억제하면서 기술경쟁을 촉진하고 있음.